

법1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신청서		접수자 이름	
		연번 / 접수일	/
위 원 자 격 확 인	조례 제7조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	증빙서류 확인	주소 (공고일 이후)
	☐ 해당 동 주민등록 된 사람	☐ 등·초본	
	☐ 해당 동 외국인(등록대장 등재자)	☐ 등록증·대장	
	☐ 해당 동 사업장 대표·종사자	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	
	☐ 해당 동 소재 학교기관단체 임직원	☐ 재직증명서 등	
성명(성별)	☐ 남 ☐ 여	생년월일	
휴대폰번호		직업(직장명)	
관 련 조 례	제7조(위원의 자격) ②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2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		☐ 확인함
	제8조(위원의 선정) ① 위원은 공개모집· 공개추첨으로 선정(단,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하로 구성) ②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본교육 최소 6시간 이수 (미이수시 자동해촉)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. ③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. ④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및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자격이 주어진다.		
	제9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연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		☐ 확인함
	제18조(위원의 의무) ① 주민의견 수렴 노력, 주민자치회 운영, 교육, 연수 적극 참여 - 위촉 후 6개월 이내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(6시간) - 월 1회 이상 회의 및 활동 참석,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활동 ② 위원의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, 사익추구 금지		☐ 확인함
	제2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첨방법에 따른다.		☐ 확인함
	제22조(위원의 해촉) 제7조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, 제7조②에 해당 되는 경우 - 2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,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-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40조 제5항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경우 -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-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,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	☐ 동의함
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, 상기인은 법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.			
20 년 월 일			
신청자 :			(서명 또는 날인)

